

## 출판부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명칭)** 본 출판부는 성결대학교출판부(이하 “출판부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 (위치)** 본 출판부는 성결대학교 안에 둔다.

**제3조 (목적)** 본 출판부는 교수연구논문, 학술논문, 교양교재, 양서번역, 정기간행물의 출판 및 공급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장 조직 및 직무

**제4조 (부서)** 본 출판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(편집부, 업무부 등)를 둔다.

**제5조 (조직)** 본 출판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부장 : 조교수 이상 중에서 1인을 둔다.
2. 직원 : 직원 중에서 약간명을 둔다.

**제6조 (직무)** 본 출판부 임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부장 : 출판부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
2. 직원 : 해당 부서의 부과된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7조 (임명 및 임기)** 본 출판부의 임직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### 제 3 장 출판위원회

**제8조 (위원회)** ① 출판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판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출판부장, 미래발전연구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출판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직원으로 간사 1인을 둔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**제9조 (회의 및 회무)** 본 출판부의 회의 및 회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정기회의 : 부장은 매학기 초에 소집하며, 사업계획, 예산결산, 규정의 개정

## 출판부 규정(3-8-1)

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2. 임시회의 : 부장은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하며, 출판 도서의 선정, 가격의 결정,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**제10조 (결의)**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## 제 4 장 출 판

**제11조 (저서발간)** ① 출판부의 저서는 본교 전임교원(정년트랙)에 한하여 발간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출판부의 저서는 출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원고에 한하여 저서로 발간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인세)** 저서의 인세는 초판일 경우 10%, 재판일 경우 15%를 저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 연구년 교원이 연구실적으로 발간한 연구저서는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 제 5 장 재 정

**제13조 (재원)** 본 출판부의 재정은 학교 보조금과 출판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**제14조 (회계년도)** 본 출판부의 회계년도는 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출판위원회의 결의로 교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.
-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출판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- ③ 본 규정의 개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(제5조)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출판부 규정(3-8-1)

---

부 칙

(시행일) 본 개정 규정(제1조 ~ 제14조)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8조)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